

편집자 주 -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햇고구마를 시식하고 있는 모습을 선정적으로 표현한 보도사진 관련 조정신청 (기사제공언론사 - 합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 - 취하)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18~322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채 ○ ○ 외 1인

피신청인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다음,
드림위즈, 야후코리아, 파란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2.

처리결과 : 조정성립(소비자가만드는신문),
취하(다음, 드림위즈, 야후코리아,
파란)

백화점 직원인 채 모 씨 등은 홍보를 위해 햇고구마를 시식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피신청인 언론사가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포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언론사와 포털사가 해당 사진을 게재하면서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음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제작상의 실수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에 응하기로 했고, 다음 등 포털사들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당일 바로 기사검색을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며 신청인에게 취하를 요청했다.

중재부는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신속히 기사를 삭제하고 포털사에 기사검색 차단을 요청한 사실을 감안하여 4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수용해 기사제공언론사와는 4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하고 포털사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취하였다.

이 사건은 포털사를 상대로 한 첫 번째 신청 사건으로서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기사를 제공하고 포털사들이 뉴스서비스를 한 것이다. 지면관계상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건내역만 수록한다.

보도내용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포경”과 수술한 “물건” 미녀들이 손에 쥐고 물고』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1일자 종합뉴스면)

내 용 : <사진 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9년 9월 4일까지 각 2백만 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각 2,000,000원 지급〉

해수욕장에서 호객 아르바이트하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방송한 보도 관련 조정신청 (손해배상 - 취하)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12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2.

처리결과 : 취 하

신청인 박 모 씨는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호객 아르바이트 중인 자신의 모습이 방송되자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조정신청이 접수된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2009년 7월 20일 KBS-2TV 「무한지대」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피서 일번지 - 해운대 속으로 GO GO」 편에서 신청인이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호객하는 장면을 동의도 없이 음성과 함께 방영하였다.

보도내용

KBS-2TV : 「무한지대」 프로그램 『대한민국 피서 1번지 - 해운대 속으로 Go Go』 제하의 보도
(2009년 7월 20일 19:10)

내 용 : (전략)

신청인 : 백사장에 모래 다~뒹아 놓았습니다.

내레이션 : 피서객 끌기 위한 파라솔맨들의 치열한 백사장 자리 전쟁이 시작됐고, 짐 들어주기 애교작전은 기본이요 자기 구역 물관리를 위한 특별 서비스까지.

신청인 : 동방신기도 있고 켉스키스도 있어요. 동방신기나 켉스키스 멤버들이랑 비슷한 피서객들 근처에 앉히려구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포털 자체 제작 콘텐츠에 대한 조정신청 (각하결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13

청구명 : 반론 · 손해청구

신청인 : 변희재

피신청인 : 야후코리아

중재부 : 서울제6중재부

접수일 : 2009. 9. 23.

처리결과 : 각하결정

신청인 변희재 씨는 야후코리아가 자체 제작한 콘텐츠인 「송지현의 사람 IN」코너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인터뷰 동영상이 게재되었다며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담당 중재부는 포털이 자체 제작한 콘텐츠는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이 아니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중재부는 이 사건의 조정대상은 언론의 보도나 기사가 아닌 피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인터뷰 동영상이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아 조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보도내용

내 용 : (전 략)

송지현 : 섭외과정도 이야기해도 되나요?

진중권 : 섭외과정이에요?

송 : 저희가 변희재 씨와 마주앉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진 : 예, 제가 그 친구하고 같이 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송 : 같이 앉을 사람이 있고 같이 못 앉을 사람이 있고 그러십니까?

진 :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은 논쟁이지만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저에 대해 스토킹을 거의 하다 싶고, 예를 들어 허경영 씨와 박근혜 씨 같이 나오라 하면 박근혜 씨가 거부하겠지요 당연히, 그 정도의 권리는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송 : 사안 하나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중략)

송 : 진 전 교수 임용 자체가 노무현 정권의 특혜였다는 지적도 올라와 있는데요

진 : 그건 뭐 변모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명예훼손 감이거든요.

송 : 임용 당시 진 전 교수 인사를 주도한 현재 김○○ 독문과 학과장인가요? 열린우리당 시절 실세 정치인 김한길 씨의 친동생이라는 근거를 대고...

진 : 저는 김○○ 씨라는 분을 전혀 몰랐구요 그 당시 독문과에서 다른 분, 나이 드신 분이 있었는데, 학과장일 겁니다. 그 분과 독문과 교수들과 토론을 했는데,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중략)

진 : 저는 87년 이후 단 한 표도 민주당한테 표를 준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살아생전에 강하게 비판했고, 아마 변희재 씨도 그것 때문에 저와 첫 인연을 맺었고, 내가 김대중 정권 옹호하는 사람들 비판했고 그쪽 편에서 서서 저와 싸운 것으로 이름을 알린 것으로 알려져있구요. (중략)

송 : 변희재 대표에게 망언으로 유명세를 타려 한다고 비판하셨는데요. 그건 진중권 씨 한테도 해당되는 말 아닌가요?

진 : 그건 그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나 (중략)

송 : 진 전교수가 확실한건 변 대표에게 변 대표는 망언을 해야 유명세를 탈 수 있다 비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야후코리아는 지난 8월 20일 야후 Live 독점 방송 송지현의 사람IN에서 진중권 씨를 초청하여 1시간 분의 방송분을 내보냈으나, 상당 부분이 허위사실이 여과없이 그대로 방송되어 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반론문을 게재합니다.

첫째, 야후코리아의 송지현 사회자는 변희재 씨와 공동 출연을 거부한 이유를 묻자 진중권 씨는 “내가 그 친구하고 같이 았을 이유가 없다”며 “예를 들어 허경영 씨하고 박근혜 씨 하고 같이 나온다고 하면 박근혜 씨가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변희재 씨를 스토킨으로 비유하며 명예훼손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야후코리아 측은 변희재 씨에게 출연요청을 하지 않았고, 변희재 씨는 그 이후에 “진중권 씨와 나는 법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로서 애초에 공동출연하는 것은 부적합한 관계”라 주장했습니다. 야후코리아는 당사자에 요청도 하지 않은 채, 그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훼손성 발언을 유도한 데 대해 변희재 씨에게 사과드립니다. (중략)

이외에도 야후코리아의 1시간 가량의 인터뷰는 절반 이상이 변희재 씨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채워져있기에, 야후코리아는 변희재 씨가 보내온 반론문을 게재하는 바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결정문

사 건 : 2009서울조정413

청 구 명 : 반론 · 손해청구

신 청 인 : 변 희 재

피신청인 : 야후코리아 유한회사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1. 야후코리아 독점 Live 방송 시작 전에 사회자 송지현 씨의 멘트로 [별지1]의 반론문을 읽도록 하고, 야후코리아 뉴스면 메인화면에 위 반론문을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송지현의 사람IN」 코너에 게재된 진중권 교수의 인터뷰 동영상 중 일부 신청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 언급되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별지 1]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해당 영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우선 피신청인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언론’이라 함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의미하고(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의미한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12호). 우선 피신청인이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인터넷신문사업자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10호 및 제11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 중에서 독자적 기사생산을 위하여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며, 지속적인 발행을 위하여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는 전자간행물을 의미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위와 같은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의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라 함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의미하고(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등은 제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 함은 위와 같은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한편, 언론중재법 제2조 제20호 및 제21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에 의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라 함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중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등이 있다.

이 사건 심리 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인터넷 관련 온라인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독자적 기사생산을 위하여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한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거나 주간 게재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인터넷신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신청인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콘텐츠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만, 피신청인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후 언론사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조정 신청 대상은 언론의 보도나 기사가 아니라 피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인터뷰 영상이라는 점에서 관계규정에 대한 해석상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신청인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영상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반론보도 등의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포털이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등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신청인 주장과 같이 포털이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포털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로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상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등의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이나 중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대한 필요성만으로는 언론중재법의 관계조항을 신청인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 언론중재법 제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조항에서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기사제공 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역할이 언론보도의 제공 또는 매개에 한정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언론중재법 등 관계규정에 정해진 반론보도 등의 조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언론중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009. 10. 29.

〈별 지1〉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성형수술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 (기사제공언론사 - 반론보도 조정성립, 인터넷뉴스서비스사 - 취하)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37~442

청 구 명 : 각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미용외과학회(회장 정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동아닷컴, 구글, 네이버,
네이트, 야후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수일자 : 2009. 10. 5.

처리결과 : 조정성립(동아일보),
취 하(동아닷컴, 구글, 네이버,
네이트, 야후)

신청인 대한미용외과학회는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전문의에 비해 성형수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다고 보도한 동아일보와 구글 등 포털에 대해 반론보도를 신청했다.

심리결과, 동아일보는 신청인의 반론보도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구글 등 포털사는 원 기사 중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여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였다.

보도내용

동아일보 : 「1만여 명의 얼굴을 만진 의사가 말하는 성형의 6가지 비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Health Town면)

내 용 : 지난달 3일 MBC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성형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심층 보도가 방송됐다.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자신이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병원 간판을 달거나 과대, 과장광고로 환자를 현혹시키는 실태를 고발한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은 뜨거웠다.

대한개원의협회에 따르면 현재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병의원은 서울에만 839곳(전문의와 비전문의가 포함된 수치)이다. 병원마다 최첨단 기계와 의약품을 구비하고, 지하철, 버스, 잡지, 포털 사이트에 병원 시설과 수술 수준을 자랑하는 광고를 한다. 그러나 어떤 병원에서 어떤 시술을 받는가에 따라 수술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자칫 1mm 오차로 ‘ 째눈 ’이 되거나 ‘ 돼지 코 ’가 될 수도 있는 것. (중략)

[21년 경력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본 성형이란?]

① 미인은 정해져있다?

미인, 미남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이목구비의 모양만으로 따질 수도 없고 개인적인 취향과 이상형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박양수 원장은 미의 잣대를 ‘얼굴형, 이목구비 등의 비례와 간격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를 꼽았다. 또 “얼굴 크기가 작고 선이 부드러우며 피부가 얇을수록 수술 후 미인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② 성형수술은 모든 의사가 할 수 있는 수술일까?

일반인들은 심장수술, 척추수술, 암 수술 등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수술은 반드시 전문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형수술은 ‘이왕이면 전문의에게’라고 할 정도로 전문의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과연 그럴까? 국내에서는 의사면허만 있으면 3개 과목을 선택해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성형수술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4년 동안 성형외과에서 전문적으로 수련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의를 비교하면 수술 결과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가급적 성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할수록 좋다.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전문의에 비해 성형수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1. 제 목 : 대한미용외과학회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14일자 Health Town 6면에 ‘1만여 명의 얼굴을 만진 의사가 말하는 성형의 6가지 비밀’라는 제목으로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전문의에 비해 성형수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아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외과학회에서는 미용수술 분야는 성형외과 고유 영역이 아니며, 성형외과 비전문의라고 해서 미용수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성형외과 전문의에 비해 많지 않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전문의보다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밝혀왔습니다.

나. 내 용 : 지난 9월 14일자 Health Town 6면에 ‘1만여 명의 얼굴을 만진 의사가 말하는 성형의 6가지 비밀’이라

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성형외과 원장의 말을 인용,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전문의에 비해 성형수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아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외과학회는 “미용수술 분야는 성형외과 고유 영역이 아니며, 성형외과 비전문의라고 해서 미용수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성형외과 전문의에 비해 많지 않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전문의보다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2009년 10월 19일자 <동아일보> Health Town면 우측 상단에 위 보도문을 박스 형태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 활자(‘병원 광고와 연예인 사진에 현혹되지 말아야...’)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9일자 Health Town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비평보도 관련 조정신청 (기각결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69, 47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장○○)

피신청인 : 동아일보, 동아닷컴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1.

처리결과 : 각 기각결정

신청인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반(反)정부·반(反)헌법적인 전교조의 들러리나 다름없는 활동을 해왔다는 동아일보 및 동아닷컴의 보도에 대해 신청인의 활동은 모두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는 피신청인의 주관적인 의견표명으로서,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보도내용

동아일보 : 「이상한 ‘참교육’」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5일자 30면 「황설수설」란)

내 용 : (전 략)

▷어떤 교육이 참교육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철학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나 교육당국, 정부의 교육방침 및 정책에 무조건 반대, 거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참교육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인간형을 만드는 게 참교육일 수도 없다. ‘참학’은 전교조의 反(반)정부 노선 및 친북(親北)좌파라는 反(반)헌법적 행태를 지지하고 지원해 왔다는 점에서 전교조의 들러리나 다름없다. (중략)

▷ ‘참학’은 이제 전교조의 단골 투쟁 메뉴였던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를 직접 떠맡겠다고 나섰다. 이달 13, 14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집단 체험학습을 떠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문화예술제 형태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상당수 교사가 중징계를 당하자 대응책으로 ‘참학’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학부모 단체가 학생들을 전교조의 도구로 내주는 건 결코 참교육이 아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결 정 문

사 건 : 2009서울조정469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자 회장 장○○

피신청인 : (주)동아일보사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9년 10월 5일자 「이상한 ‘참교육’」 제하의 보도에서 참학이 전교조의 들러리나 다름없으며, 학생들을 전교조의 도구로 내주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신청인회의 활동이 주체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전교조의 들러리’라고 폄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뤄졌음에도 참학이 전면에서 나서 학생들을 ‘전교조의 도구’로 내주었다고 폄하하여 신청인회와 소속 회원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론보도등

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피해자’라 함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가치평가적 인식의 표현인 의견, 감정, 논설, 비평 등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는 신청인 및 신청인의 활동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나 비평으로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해당 보도내용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은 언론중재법상 사실적 주장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에,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29.

KBS-2TV「미녀들의 수다」프로그램 ‘루저발언’에 대한 조정신청 (기각결정 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14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1.

처리결과 : 기각결정

신청인 260명은 KBS-2TV「미녀들의 수다」프로그램에서 “키 작은 남성은 루저라고 생각한다”라는 출연자의 발언이 방송되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각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사건을 서울의 7개 중재부에 배당하여 심리한 결과, 서울제7중재부 등은 문제의 발언이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 아닌 방송 출연자의 개인적인 취향 내지는 의견을 방송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청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고, 서울제6중재부에서는 심리를 열었는데, 피신청인이 사과방송 등을 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다.

유 모 씨 등 총 260명의 남성들은 2009년 11월 9일 KBS-2TV「미녀들의 수다」프로그램 ‘미녀, 여대생을 만나다’ 편에서 “키 작은 남성은 루저라고 생각한다”라는 출연자의 발언이 방송되자, 키 작은 남성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녹화방송임에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방영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최저 2,500원부터 최고 38억2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지면관계상 기각된 사건과 조정성립된 사건 각 한 건씩을 수록한다.

보도내용

KBS-2TV :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 『미녀, 여대생을 만나다』편 (2009년 11월 9일 23:15)

내 용 : (전략)

출연자 : 저 같은 경우도 일단 키 작은 남자는 싫어요.

MC : 왜?

출연자 : 요즘 키 큰 분들도 굉장히 많고, 외모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에서 키는 굉장한 경쟁력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MC : 어허...

출연자 : 그래서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MC :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키는... 이 정도 이상 돼야 한다?

출연자 : 제가 일단 키가 170cm다 보니까 최소한 180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C : 남자 키가 180cm가 돼야 된다?

패널 : 여기엔 없네요, 지금.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결정문

사 건 : 2009서울조정514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유○○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KBS)

주 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들의 주장 요지

신청인들은 키가 180cm 이하인 남성들인데, 2009년 11월 9일 방영된 KBS-2TV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 ‘미녀, 여대생을 만나다’ 편에서 특정 출연자가 키 작은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키 작은 남자는 루저(loser)라고 생각합니다”)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편집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각 구한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론보

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언론보도라 함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 즉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관한 보도를 의미하는 것이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15호, 제14호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신청인의 위 보도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방송출연자의 개인적인 취향 내지는 의견을 보도한 것에 불과하여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또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우리나라 남성들 중 키가 180cm 이하인 남성들 개개인 또는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의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26.

.....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89 등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금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2009서울조정51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1. 피신청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지 예능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2. 향후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제목 및 내용에서 ‘미녀’ 등 신체적 표현이나 요소를 배제할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다.
 3. 이번 사태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시청자들에게 방송을 통하여 사과한다.
 4. 피신청인은 향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및 편집에 참여한 PD, 작가 등 실무자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